
지정기부금 사용업무 및 정산지침

2024. 09.



구리시체육회
GURI CITY SPORTS COUNCIL

I

지정기부금 정의 및 사용범위 등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18. 3.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 기부금 정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부자산의 취득가액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하는 금액)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 인	개 인	
특수관계 있는 경우 (보통, 임직원인 경우)	MAX (장부가액, 시가)	MAX (장부가액, 시가)	시 가
특수관계 없는 경우	장부가액(제조원가)		장부가액(제조원가)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경우

-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예시) 회원단체회비, 임원회비 등

3. 기부금 사용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그 단체의 특정용도로만 지출되어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됨

·(예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참여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비

○ 지정기부금 사용은 본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회원단체(불특정 다수)의 각종 체육진흥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단, 지정기부금은 보조금 형식으로 본 지침 의거 집행·정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후관리 함.

◎ 구리시체육회 정관 ◎

- 제2조(목적)

‘구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리시와 경기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구리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구리시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구리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구리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구리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구리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구리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구리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구리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기부금 모집 행위 금지

-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란 서신, 광고 등 각종 매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5. 기부금품 사용 기한

-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 부과
(단, 기부 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부금품을 사용.)

III 지정기부금 사용 관련

▶ 지정기부금 세입/세출예산(안) · 결산(안) 공시 필요

-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지정기부금 예산계획(안) 필요
- 사업연도 종료 이후 “기부금 세입 · 세출결산(안)” 승인

▶ 지정기부금 기부자(처) 및 본회 처리 절차

기부자(처)	▶ 기부자(처)는 기부를 원하는 경우 본회 연락 후 지정기탁서(양식)제출	
↓		
본 회	▶ 검토 : 지정기탁서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 및 협의 (고유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 지정기탁 승인 : 이사회를 통해 기부금 출연 보고 및 운용계획(안) 승인	
↓		
본 회	▶ 기부자(처)에게 기탁 승인 및 지정기부금 계좌 알림 (입금확인) ▶ 기부금 교부일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처)	▶ 영수증 수신 (교부일 기준)	*공제신고 : -개인 : 연말정산시 -법인 : 결산 월별에 따라 다름
↓		
본 회	▶ 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집행 및 정산 시행
↓		
본 회	▶ 정산 완료 보고(내부결재) 및 결산(총회) ▶ 국세청 의무이행 신고	

III

지정기부금 사용의 기준

1. 예산·회계 관련

- 본회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며, 지정기부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집행
- 회계에 포함되어야 함.
 - 국고(및 지방비) 및 기금회계와 분리하여 별도계정으로 운영
 - 지정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예·결산에 포함
 - 기부금 관리 대장 등 별도 비치·관리(예 : 지정기부금철)
 - 예비비 등 인건비 및 개인 소득과 관련된 경비성 목으로 사용 금지

※ 세법상 지정기부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인건비 일부를 지정기부금으로 충당할 경우 추후 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 확보가 난해 할 수 있음.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해제에 관한 대부분의 이유가 과다인건비 사용이나 인건비 사용을 위한 불법 모집행위, 사후관리미흡 등으로 지정 해제 사고에 대한 방지 차원임.

2. 집행 관련

- 지정기부금을 이월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지원 신청문 제출시 지정기부금 사용명세서와 함께 제출
 - ※ 정산보고서 제출시 미집행에 의한 지정기부금 지원금 잔액의 경우에도 별도로 지정기부금 사용명세서 제출
- 지정기부금 집행 기간은 가급적 교부시점부터 연간사업은 회계연도(1.1~12.31) 이내에, 단일 사업은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명은 반드시 문구 기재 - 특정업체 대가성 홍보사업으로 사용불가
- 지정기부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최소 2주전 지원 요청에 한

하여 교부함. (*당 해 11월 30일 까지 지원 요청 제한)

- 사무국 운영비일 경우 회계연도 말에 집행을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
-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본 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정기부금 지원 제한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 정산서류 상태가 미흡하거나 허위일 경우
- 지정기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원단체에서 직접 기부를 받아 계좌에 기부자(처)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본 회에 입금하는 날씨가 기부일자로 지정됨을 기부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함.

※ 기부일자 및 영수증 발급일자(교부일) 변경 불가

- 단일 사업 시행을 위해 출연한 다수(10건 이상)의 소액기부금(₩300,000이하)에 대해서는 모집 권유행위로 간주 함. ※ 해당 회원단체 반환조치
- 지정기부금 출연 강요를 위한 행정행위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외 일체 서류발급, 행정협조 요청은 불허함.
- 각종수당(운영자, 심판, 행사 진행자, 지도자, 감독자 등)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자체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기금집행의 부적정 유형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지정기부금의 부적정 집행유형 (예시) ▷

구 분	정 의	내 역
목적 외 집행	고유목적사업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물품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 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사업 기간 외 집행	○ 지정기부금 지원 사업기간 외 집행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 목의 신설·목간 전용 집행시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운영비 등 계좌이체를 통한 실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간이영수증 및 통상적이지 않고 임의 작성된 영수증 ○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만큼 훼손된 영수증 등
의도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V

지정기부금의 정산

1. 지정기부금 지원 대상 및 정산 의무화

- 집행한 지정기부금은 구리시지방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할 것.

□ 정산관련 행정사항

- 교부되는 지정기부금 집행 정산자료는 원본으로 매 회계연도 종료시 까지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관리·감독 바람
- 국세청, 감사원, 국감, 도내감사 기타 등등 본회 요구시에는 정산자료(영수증, 증빙서류 일체)등 상기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구비 서류가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일 경우 발견시 소속 회원단체포함 지정기부금 지원 회원단체에서 제한 될 수 있음.

2. 정산 관련 양식

- 지정기부금 지원사업 자체 결과보고서 (각 사업별 작성 후 보관)
- 지정기부금 통장 연간 입·출금 내역 사본

3. 정산보고서 구비내용

- 사업비 집행내역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사용목적(행사명 등),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담회 등 사무국 운영비 집행내역은 일시 및 장소는 물론 및 업무목적, 주요내용, 참석인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외~”등 축약하여 기재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VI 지정기부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리 기준

1. 지정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음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지정기부금을 교부받은 회원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정기부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 및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조치 ○ 횡령액 반환 조치 ○ 지정기부금 지원 대상 단체 5년간 제외
2. 지정기부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정기부금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정기부금을 출연 받아 사용한 경우 또는 경기도체육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단체명의로 임의 지정기부처리 영수증 발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 처리 불가 ○ 허위신고에 관한 기부금 관련 과태료 ○ 지정기부금 지원 대상 단체 1년간 제외
4.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정기부금을 사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 처리 불가 ○ 해당액 반환 조치 ○ 지정기부금 지원 대상 단체 5년간 제외
5.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
6. 사용기한(5년)내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가산금에 대한 과태료 일체

VII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

2.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① 전용계좌개설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받은 재상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 다만, 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⑤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 학교법인, 유치원 제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3.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 분	내 용	
① 장부의 작성, 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 보관)	
②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③ 출연재산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70%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주식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80%)
	의무지출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3%)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④ 주식관련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일반공익법인 10%(자선, 장학,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상증법 제48조제11항 각호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익법인 5%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⑤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	
⑥ 공익법인회계기준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⑦ 기 타	특정 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금지	

-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3),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4839) 에 따라 운영

[참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절차

구 분		의무 사항과 기한	의무이행 대상
당해연도	기부금 수령시	기부금 전용계좌 신고 및 개설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 (홈텍스))	기부금을 받는 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	기부금을 받는 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 (*5년보관)	기부금을 받는 단체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시 X)
차기연도	3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을 받는 단체
	4월	결산서류 등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5년간 보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시 X)

[별첨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구리시체육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후원자 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필수정보 수집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등 후원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후원자 본인 식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행, 후원금(품)에 대한 현황 관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원 서비스와 관련된 공지사항 등과 같은 홍보, 불만처리 등

필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필수정보 수집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후원자 본인 식별, 국세청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와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이용자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후원 계약 또는 후원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후원금 결제 또는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후원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의 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이력 관리, 후원서비스 공지, 불만사항 처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첨3]

담당자	팀 장	사무국장	회 장

지정기부금(품) 사용계획서

기 부 자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기부일			
	⑤ 기부목적			
	⑥ 기부방법	지정기부금 전용계좌		

사 용 계 획

⑦ 사 업 명	⑧ 기부금액	⑨ 사 용 용 도	⑩ 사용기간
합계			

년 월 일

담당자 : (인)

지정기부금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① 성명 또는 법인 명 : 기부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성명,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만 기재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명과 동일하게 기재
-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부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③ 주 소 : 기부자의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를 기재
- ④ 기부 연 월 일 : 기부금이 체육회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
- ⑤ 기부목적 : 출연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집행 사업 명을 정확히 기재)
- ⑥ 기부방법 : 현금, 현물
 - ※ 현물 기부시 추가 첨부 자료
 - 제조업체 직접 생산, 판매물품 기부시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첨부 제출 (기부자가 현물을 구입해서 기부시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제출)
 - 물품수령증 첨부 제출
 - 물품수령사진 첨부 제출
- ⑦ 사 업 명 : ⑨기부목적에 맞는 사업 명을 기재
- ⑧ 기부금액 : 기부받은 금액을 원 단위로 기재
- ⑨ 사용용도 : 사업계획 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기재
 - 예) 생활체육광장운영 사업 중 장소 대관료, 홍보물 제작 ○원, 지도자수련회 개최 ○원 등
- ⑩ 사용기간 : 교부받은(출연된) 기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기재
 - ※ 주의 : 1. 상기 대표자명(지정기부금의 기부자)과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자(법인명)가 동일하여야 함
 - 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대부분이 해당 회계년도내에 시행과 종료되므로 한시적 단발성사업에 가급적 사용 바람.

집행내역서

가.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원)

수령일	금액	사용용도	사용처 (직접수혜자)

나. 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수령일	집행일	집행			
		목	세목	금액	내역

※ 각 지원 사업별 매회 작성후 자체보관하여야 함.

[별첨5]

지정기부금 관리대장

기부자(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수혜자	사용용도	정산액	비고 (이월 등)

※ 이월 사용시 지정기부금 사용명세서 제출

지정기부금의 사용명세서

① 기 부 년월일	② 기부자	기 부 내 역		사 용 내 역			
		③사 업 명	④금액	⑤사용 일자	⑥사용 가액	⑦집행 잔액	⑧이월 사용 계획일

년 월 일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항목은 기부자가 체육회에 지정기부금을 출연한 최초 일자 기재

※ 정산보고서 제출시 정산미비인 이월금 대한 내역은 본 명세서로 대체

지정기부금의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 ① 기부 년 월 일 : 기부한 금액이 체육회에 귀속된 날짜를 기재
 - ② 기 부 자 : 기부한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
 - ③ 목적사업명 : 기부금의 기부목적 사업명을 기재 예) 구리시○○○대회 등
 - ④ 금 액 : 기부당시의 현금이 경기도체육회 지정기부금 통장에 입금된 액수를 원 단위로 기재
 - ⑤ 사용일자 : 기부 받은 금액을 사용한 기간 및 사용완료 일자를 기재
 - ⑥ 사용가액 : 당해 연도에 사용한 가액을 기재
 - ⑦ 집행잔액 : 남은 집행 잔액을 기재
 - ⑧ 이월사용 계획일 : 집행잔액 사용 계획일 기재
- ※ 지정기부금 지원 요청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집행할 경우 위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지원 요청할 것

[별첨6]

인 수 증

품 목	규 격	단 가	금 액
합 계			

○ 사업명 :

○ 대회기간 :

○ 장소 :

○ 물품 수령 날짜 : . . .

○ 물품수령자 : (인)

위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구리시체육회장 (직인)